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0일,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의원)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
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

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 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 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¹⁾(CCTV)의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경우 설치·운영은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 ②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③ 교통단속, ④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경우가 아니면 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³⁾에 대해서도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서 범죄예방,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70만대를 상회하고 있으나, 재난 예방·대응 목적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해당 목적 용도의 CCTV 설치 및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재난 예방·대응 목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⁵⁾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이동형 포함)의 설치·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난위험 지역에 재난 예방·대응 목적의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통합방위법」에서 규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고 있는 “침투”, “도발”, “위협”의 정의⁶⁾가 ‘적의 침해 의도’를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통합관제센터가 연계·통합 관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CCTV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⁷⁾의 CCTV까지 확장하며, ③ 통합관제센터에 재난안전상황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재난관리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6)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목적(범죄예방 등) 외에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통합관제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재난의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제 대상 CCTV 범위의 확대 및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루는 영상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정보의 활용 범위를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통합관제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위험요인 및 위험징후에 대한 안전신고 규정 마련 등

먼저,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또는 ‘안전신고’를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문화활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등을 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7일부터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안전문화활동으로 추가하여 규정⁸⁾하였음.

그런데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⁹⁾에서는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한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어,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또는 ‘안전신고’ 관한 내용을 안전문화활동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라 각종 사고를 예방하게 하고,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봄.

다만, ‘안전신고’는 국민의 활동에 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해야 할 안전문화활동은 ‘안전신고 활동의 장려’라고 할 것이므로, 정의 규정에도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다음으로, 안전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교적 비긴급한 상황에서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가 발견된 경우에 대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 관련 신고는 의무사항인 재난신고와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그 필요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4)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

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 관련 정보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부정 사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 및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이 이미 해당 기관들에 대해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¹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입법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벌금형의 추가 및 자격정지 배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입법방식¹¹⁾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10)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 김선교의원안은 현행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 중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